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(조례 제2517호 1999.9.7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,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,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,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,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·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까지 전조의 증명군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】 [제정 2003.5.29 법률 제06902호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충청북도에 증평군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충청북도 증평군 설치) ① 충청북도에 증평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명 칭	관할구역
증 평 군	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·도안면 일원

② 충청북도 괴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.

부칙 <제6902호,2003.5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(이하 "증평군"이라 한다) 소속의 직원이 된다.

② 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의 군수나 그 소

속가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출장소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중평군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.

제4조 (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) 중평군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중평군수의 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동시에 실시한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15조 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